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3555
결재일자	2015.2.1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복지기획담당	복지정책과장	교육문화복지국장	부구청장	
김수연	이병성	민지선	도일환	02/11 김병환	
협 조	기획예산과장		이용식		
	★생활보장과장		심진숙		

2015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

2015. 2

교육문화복지국
복지정책과

2015년도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계획

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으로 교과부 소관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 신청 및 접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I. 사업개요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초·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비 신청·접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
- 저소득층 학생이 기존대로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발생할 낙인효과(Stigma) 문제를 해소
- 지자체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(행복e음)을 활용하여 소득·재산을 조회함으로써 공정하고 정확한 지원대상자 선정이 가능해짐

□ 추진근거

- 초·중등교육법(2012. 3. 21 시행)

- ▶ 법 제62조 제3항 : 교육비 지원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▶ 령 제106조의 2 제3항 :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 1.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
 2. 지원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·질문 등에 관한 업무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-1147(2015.02.04)호
「2015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및 지원금 교부」

□ 사업내용

○ 교육비 지원 절차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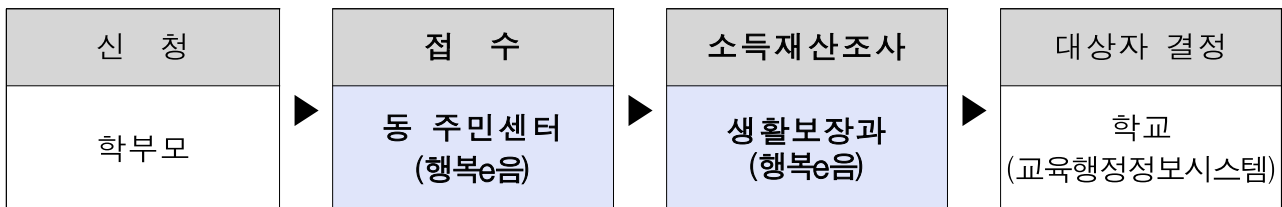
① 지원대상 : 초·중·고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학생

※ 기초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, 기타 저소득층, 담임교사 추천 등

② 지원내용 : 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고교학비, 교육정보화지원

③ 처리절차

- 학부모 : 인터넷(<http://oneclick.moe.go.kr>)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교육비 지원 신청
- 지자체 : 지원신청 접수 및 신청자 가구의 소득·재산조사 실시
- 학 교 : 지자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여부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



○ 교육비 신청·접수 임시인력 운영

- 채용기간 : 2014. 2 ~ 3월 (1개월)
- 채용방법 : 추천채용
- 채용인원 : 12명
- 담당업무 :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·접수 업무지원
- 소요예산 : 18,000천원(국비)

II. 교육비 지원 절차 운영

□ 신청 및 접수

○ 기 간 : 2015. 3. 2(월) ~ 3. 13(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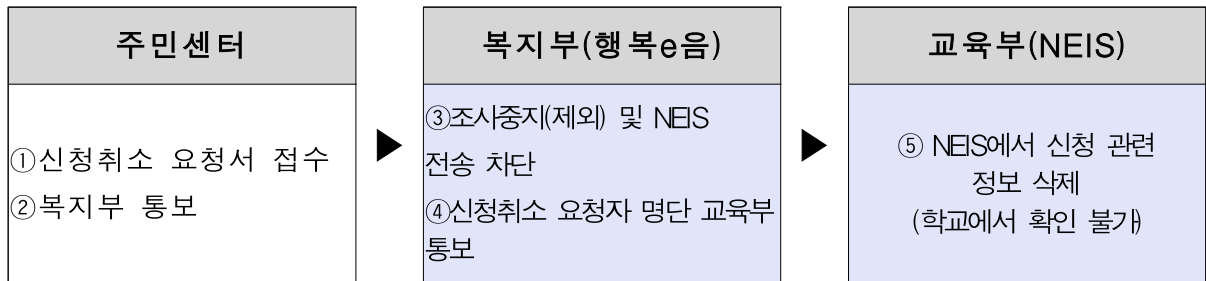
○ 신청방법 : 인터넷(<http://oneclick.moe.go.kr>)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

○ 신청대상

- ① 2014년에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한 학생
- ② 2014년에 교육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담임추천을 통해 지원을 받은 학생
- ③ 그 외 2015년에 교육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(초등 신입생 포함)

○ 학부모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신청간주자(확인조사 대상자)의 신청 취소(철회) 절차 마련

- 학부모는 학생자존감 보호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(철회)를 요청
- 복지부는 조사 중지, 교육부는 NEIS에서 신청 관련 정보삭제



○ 농어업인삶의질법, 댐건설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과후수강권, 급식비 등을 지원받은 학생은 타지역 학교 진학시 반드시 신청 필요

□ 2015년도 신청절차 면제 대상

- '14년도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심사
 - ① '14년에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한 후, 교육비를 1종 이상 지원받은 학생
 - ② '14년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한 후,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학생(단, 9월 이후 담임추천을 받은 학생은 신청 대상임)
 - ※ 신청 절차만 면제되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함
- 학부모가 인터넷(<http://oneclick.moe.go.kr>)에서 '14년도 교육비지원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(2월중 개통)
 - ※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5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 (학생은 신청 불가)

□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

- 시도교육청과 협조, '14년도 교육비 지원 실적, 예산집행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 확대추진
 -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학비(일반고, 최대180만원)지원범위를 최저생계비 대비 150% 수준으로 확대 ※'14년 고교학비 : 130%
 - 방송통신고, 국립 초·중·고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
 - 1년 이상 조부모 부양 가구는 교육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
 - '14.3.1. 이전부터 신청자와 조부모의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경우 희망 가구에 한해 동거 조부모를 소득·재산조사 가구원에 포함
 - 희망하는 민간장학재단과 협조하여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과 장학생 선발의 시기, 방법 등 연계 운영 추진
 - 학교의 장학생 추천 부담 및 재단의 선발 부담 경감, 교육비 심사 탈락자 구제 효과 등 기대
- ※민간장학재단수요조사('15.1월~2월)→ 기본 계획 수립('15.3월)→ 장학생 선발요강 통합 안내(4월)
→ 학교별 장학생 추천(5월)→ 장학생 심사·선발(6월~)

□ 소득·재산 조회

- 조사방법
 - '15년 3월을 기준으로 대상별로 소득·재산 조사 실시
 - 신청간주자(확인조사 대상자) 우선 조사 후 '15년 신규신청자 조사
 - 조사내용
 - 행복e음을 통해 학생 가구원(부모, 형제)의 근로소득, 사업소득, 부동산, 금융재산 등을 조사
 - '14년 지원자는 가족관계, 거주지 이전, 수혜 실적 등 기초자료 사전 정비 (~'15.1월) 후, 소득·재산 조사 실시
 - 이의신청 강도가 심한 국세청 제공 '상시근로소득'정보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사팀에서 추가 직접조사 실시 추진(복지부 협조 필요)
- ※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파악되지 않으나 국세청에서만 상시근로소득이 파악되는 경우로 한정

□ 심사 및 통보 : 학교

- 학교에서는 신청자(신청간주자+신규신청자)에 대한 소득·재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·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'15년도 교육비 지원 여부를 심사·통보
- 지자체에서 전송한 소득인정액을 교육부는 NEIS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에서 최저생계비 비율로 변환하여 학교에 제공
- 2015년 학년별 교육비 지원 범위 : <붙임1> 서울시교육청 교육비지원 기준 안내
- 심사 결과 통보 시 문자메시지(SMS)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 명확히 안내

□ 홍보 및 담당자 교육

- 홍보자료 배포 : 2월 4주 중 포스터 및 소책자 배포 예정
- 업무담당자 교육 : 2월 24일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실시 예정
- 상담센터 운영
 - 서울시교육청 콜센터 : 1396
 - 학부모를 위한 전국단위 상담 센터(1544-9654, 2월 중 개통)

III. 교육비 신청 · 접수 임시인력 운영

□ 운영일정

- 채용 신청 접수 : 2015. 02.11(수) ~ 2015. 02.16(월)
- 대상자 선발 : 2015. 02.17(수)
- 근무기간 : 2015. 02.23(월) ~ 03.20(금)

□ 채용계획

- 채용인원 : 12명 <붙임6. 2015년도 자치구 지원액 참조>
- 신청자격 : 만19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로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자

- 우대사항 : 복지도우미 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유경험자
- 근무기간 : 2014. 2. 24 ~ 3. 21 (휴일제외)
 - 근무형태 : 1주 5일 근무(토요일, 공휴일 휴무)
 - 근무시간 : 1일 8시간 (09:00~18:00, 휴게시간 1시간 제외)
- 채용방법
 - 접수기간 : 2014. 2. 11(수) 09:00 ~ 2. 16(화) 18:00
 - 접수방법 : 동별 채용 희망자 추천
 참여대상자가 자필서명한 참여신청서, 근로계약서, 보안서약서 원본 송부
 그 외 최근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 제출
- 선발확정통지 : 2015. 2. 17(화)
- 근무장소 : 각 동 주민센터
- 복리후생 : 4대보험 가입
- 임 금 : 1일 47,640원 (부대경비 3,000원/일 포함)
 - 단가는 최저임금 기준에 준하여 시급 5,580원, 부대경비 3,000원 / 1일
 - 개근 시 주·월차 유급휴일수당(44,640원) 지급
- 담당업무 : 교과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·접수 업무 지원
 - 민원인에게 서비스 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각종서식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
 -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행복e음에 입력, 시스템을 통해 정보조회 후 가구구성
 - 상세업무 내용은 교과부 교육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별도 안내 예정

□ 교육 실시

- 일 시 : 2015. 2. 23(월) ~ 2. 24(화)
- 장 소 : 별도 안내 예정
- 대 상 : 채용된 임시인력
- 주 관 : 보건복지부

- 내 용
 - 교과부 교육비 지원사업 지침
 - 신청 접수 업무에 대한 행복e음 사용법,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

□ 근무지침 및 유의사항

- 임시인력 근무지침
 - 단정한 복장과 용모로 성실히 근무할 것
- 교육비 지원사업 접수 임시권한 부여
 - 행복e음 임시권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철저

□ 소요예산

- 구 예산배정액 : 18,000천원(국비)
- 예산배정시기 : '15년 2월 셋째주까지 교육청에서 각 자치구별 배정
- 예산편성(안)
 - 인건비(86%) : 15,480천원
 - 일반운영비(14%) : 2,520천원

IV. 행정사항

□ 부서별 업무사항

- 동주민센터 : 인력 추천 및 채용서류 송부
- 복지정책과 : 사업 기획 및 인력 채용
- 생활보장과 : 지원대상자 소득조사 실시
- 기획예산과 : 국비보조금을 우리구 예산으로 편성(간주처리)

□ 동 주민센터

- 교육비 지원신청 접수업무 처리 철저
- 교육비 지원사업 홍보자료 배포 : 포스터, 소책자 등
- 동 담당자 교육 참석 : 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

○ 임시인력 복무관리 철저

-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로참여 불허
-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징구
- 근무상황부는 15.03.20(금) 한 원본 송부

- 붙임 1. 서울시교육청 교육비지원 기준 안내 1부.
2. 참여신청서 1부.
3. 근로계약서 1부.
4. 보안서약서 1부.
5. 출근부 1부.
6. 2015년도 자치구 지원액 1부. 끝.